



보도자료

- 광역교통정책팀 팀장 권오성
사무관 안병삼
- ☎ 02-2110-8712
- abs59@moct.go.kr
- 5월16일 배포(총2매)

· 5월17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분담방안 마련

□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을 개정하여 5.16(수)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은

- 그동안 개선대책의 재원분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·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간 의견조정 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·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간의 개선대책 비용 분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명시하였다.

-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교통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대규모개발사업과 상관없이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

- (건설공사 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사업)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,
- 다만,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통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.
- 이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재원분담 기준을 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개선대책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*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시·도 협의기간 : 평균 8.7개월
-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기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였다.
- 수용인구가 10% 이상 증가하거나, 교통시설 규모 30% 이상 , 사업기간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.(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 생략)
- 건설교통부는 지침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,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